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0일 임영순의원의외 5인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-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(안 제2조)
-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 지급기준 규정(안 제3조)
-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(안 제4조)
- 의정활동비 등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(안 제5조)

### 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 4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여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【 관련법령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